

공시송달 공고

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0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부독촉 및 체납고지서를 송달(등기)하였으나, 부재 및 보관물 미수취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조속한 시일 내에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5월 16일

성 남 소 방 서 장



- 공고제목 :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체납고지서 공시송달
- 근 거 :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
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
- 공고기간 : 2024. 5. 16.(목) ~ 2024. 6. 13.(목)
-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 명	주 소	최종부과일자	부과금액(원)	위 반 내 용	비고
주식회사 에스디소방산업	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제일로 192	2025.05.01.	금654,000원 (금육십오만 사천원)	소방시설 공사업법 등록사항 변경위반	

5. 안내사항

- 귀하께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[별표 5] 「과태료의 부과 기준」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, 납부하지 않아 현재 체납 중입니다.
- 이에 납부 독촉을 안내하오니, 가까운 금융기관(전국)에 반드시 납부하시기를 바라며, 현재 체납으로 인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절차(재산압류, 신용정보 제공, 감치 등)가 진행 됨을 알려드립니다.
- 또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에 따라 최고 75%까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.
- 성남소방서 청문인권담당관 청문인권팀으로부터 고지서(가상계좌)를 받아 납부 할 수 있고, 인터넷, 은행CD/ATM기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습니다.

- 고지서 재교부 문의 : 성남소방서 청문인권담당관 청문인권팀(031-720-0163). 끝.